

대학원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

제 정 2022. 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대학원 원격수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원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을 위한 교과목 선정·운영 및 수업질관리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유학생의 원격수업 수강 및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
5.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
6.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
7.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②위원장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본교 교원과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및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결과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